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32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임종득・최형두・권영진
박성민・최은석・윤상현
서범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폐업보상)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폐업에 대한 보상금(이하 “폐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폐업보상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보상금은 별도의 계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업보상금의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적립의 대상 및 기준, 예치

및 분리보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13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폐업보상)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폐업에 대한 보상금(이하 “폐업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따른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가맹계약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유지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폐업보상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

	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보상금은 별도의 계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폐업보상금의 산정 기준, 지급 방식, 적립의 대상 및 기준, 예치 및 분리보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벌칙) ① · ②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상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